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황정아·강준현·윤건영

박홍배 • 김문수 • 송재봉

오기형 • 이연희 • 허성무
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, 단순 소지·구입·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 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,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1항 중 "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"를 "사람의"로, "5년"을 "7년"으로, "5천만원"을 "7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5년"을 "7년"으로, "5천만원"을 "7천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의"를 "제4항까지의"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과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을 소지·구입 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
제14조의3제1항 중 "1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	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
등) ① <u>반포등을</u> 할 목적으로	등) ① <u>사람의</u>
<u>사람의</u> 얼굴·신체 또는 음성	
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	
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	
서 "영상물등"이라 한다)을 영	
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	
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	
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	
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	
서 "편집등"이라 한다)한 자는	<u>7년</u> <u>7</u>
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5천만원</u>	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	2
물ㆍ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	
"편집물등"이라 한다) 또는 복	
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	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	
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	
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	
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	
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	
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	

등의	대상	자의	의기	나에	반ㅎ	┝여
반포동	등을	한 기	나는	<u>5년</u>	이ㅎ	l 의
징역	또는	<u>5천</u>	만원	이경	하의	벌
금에	처한1	다.				

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다.
- 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 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 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에 처한다.

<u>3년</u> 이성	상의	유기징역
③ (생	략)	

<u>7년</u>
<u>7천만원</u>
<u>.</u>
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과
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을 소지
•구입•저장 또는 시청한 자
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⑤</u> <u>제4항</u>
까지의
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
협박·강요) ①
<u>3년</u>
②
<u>5년</u>
③ (현행과 같음)